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. 11. 18 선고 2019가단7382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A중중

피고파주시

소송대리인 B, C, D, E

변론 종결2020. 10. 7.

판결 선고2020. 11. 1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7,789,5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6. 29.부터 2020. 11. 18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4/5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43,924,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5. 2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가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(이하 순번에 따라 '제○토지'라 하고 이를 통틀어 '이 사건 각 토지'라 한다) 중 제1토지,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9, 3, 18, 1,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ㄴ'부분 21㎡(이하 '선내 'ㄴ'부분'이라 한다), 제3토지, 제4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3, 4, 20, 21, 22, 23, 24, 25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ㄱ'부분 263㎡(이하 '선내 'ㄱ'부분'이라 하고, 선내 부분을 통틀어 '이 사건 선내 부분'이라 한다)는 2014. 2. 이전부터 피고가 개설한 도로 및 그 부지로 이용되어 왔다.

나. 피고는 파주시 도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9. 3. 6.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, 감정인 F의 감정결과,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1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용절차 등 적법한 보상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면 그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점유·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는 도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치 못한다(대법원 1991. 3. 12. 선고 90다5795 판결 등 참조).

2) 피고가 2014. 2. 이전부터 제1, 3토지 및 이 사건 선내 부분을 도로 및 그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, 피고가 2019. 3. 6.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기 전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 등 적법한 보상절차를 취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1, 3토지 및 이 사건 선내 부분을 점유·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.

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제1, 3토지 및 이 사건 선내 부분을

점유·사용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(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전체를 전부 점유,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, 앞서 인정한 범위를 넘어 점유,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).

3)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가 제1, 3토지 및 이 사건 선내 부분을

점유하기 시작할 당시 이용현황은 도로였던 사실, 제1, 3토지 및 이 사건 선내 부분을 도로로

상정하였을 때 2014. 2. 14.부터 2019. 2. 13.까지의 차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2014.2.14.~2015.2.13.	206,800(월17,233)	46,200(월3,900)	783,200(월65,317)	578,600(월48,217)
2015.2.14.~2016.2.13.	206,800(월17,233)	46,200'(월3,850)	783,200(월65,267)	578,600(월48,217)
2016.2.14.~2017.2.13.	208,680(월17,390)	46,620(월3,885)	790,320(월65,860)	583,860(월48,655)
2017.2.14.~2018.2.13.	208,680(월17,390)	46,620(월3,885)	790,320'(월65,860)	583,860(월48,655)
2018.2.14.~2019.2.13.	210,560(월17,547)	47,040(월3,920)	797,440(월66,453)	589,120(월49,093)
	1,041,520	232,680	3,944,480	2,914,040

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제1, 3토지 및 이 사건 선내 부분에 대한 2014. 2.

14.부터 2019. 2. 13.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합계

8,132,720원(=1,041,520원+232,680원+3,944,480원+2,914,040원) 및 이에 대한

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피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20. 9. 3.부터 5년 전인

2015. 9. 3.경 이전에 해당하는 청구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여 소멸시효가

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원고가 2019. 5. 30.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로써 2014. 2.

14.부터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, 이로써 이 사건 소제기

전 5년이 되는 시점인 2014. 5. 31.부터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, 2014. 2. 14.부터 2015. 5. 30.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,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. 5. 31.부터 2019. 2. 4.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합계 7,789,535원(=997,603원¹⁾ + 222,741원 + 3,778,027원 + 2,791,164원)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9. 6. 29.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. 11. 18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송효섭

별지

1) = 1,041,520원 - 17,233원 × (2 + 17/31), 원 미만 버림, 이하 같다.